

(통권 21-6호)

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1. 4. 23.



충청남도의회사무처
(예산정책담당관)

분 야 별 목 차		
분 야	제 목	페이지
I. 경제	1. 2021 경제전망	1
II. 재정	2. 2020년(FY2019)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	2
	3. 지방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	5
III. 정책	4.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	6
	5. 해양바이오기업 의 규제 정비 및 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	8
	6.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 효과	10
IV. 법률 제·개정	7.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	11
	8.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	11

1. 2021 경제전망 (국회예산정책처, 2021.3.31.)

- 2021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, 3.1% 성장 전망
 -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해외수요 확대에 힘입어 호조가 예상되고, 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전망
- 민간소비는 지난해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지만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하여 더딘 회복이 예상
 - 취업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완화되고 대면서비스 업종이 제한적으로 회복되어 전년대비 8.3만 명 증가할 전망
 -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지며 1.3% 상승할 전망
-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
 -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는 비대면경제활성화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켰음
 -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으로서 우리 경제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, 기술혁신 등을 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시사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NABO 브리핑, 2021.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2. 2020년(FY2019)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

- 행정안전부, 「2020년(FY2019)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」 발표(2020.12.15.)
 -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, 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매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을 공개
 - 2019회계연도에 29개 중앙관서에서 추진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933개이며, 정부 최종예산 62.2조원 중 61.2조원이 교부(교부율 98.4%), 이 중 78.2조원(집행률 85.8%) 집행
 - 중앙정부 국고보조금 대응지방비를 합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(최종예산) 규모는 총 91.1조원, 이 중 78.2조원 실집행
 -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로(최근 3년간 연평균 14.2%), 2019년에는 총 규모가 21.0% 증가했으며 교부율은 전년 대비 0.2% 증가한 반면, 집행률은 0.2% 감소함

- 사업분야 및 국고보조율 별 집행실적을 보면, 복지·보건 분야는 교부율·집행률이 모두 높은 반면, 문화·관광, 국토·지역개발 분야는 교부율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며, 보조율이 높은 사업이 낮은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높음
 - 사회복지, 보건 분야는 교부율과 집행률 모두 90% 이상으로 높은 반면, 문화·관광,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교부율 대비 집행률이 40%p 이상 부진
 - 사회복지, 보건분야의 높은 집행률은 기초연금, 의료급여 등 현금지급 성격으로 집행이 용이한 경상보조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

- 문화·관광분야와 국토·교통분야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확충, 도로건설 및 도시재생 사업이 주를 이루어 사업계획 변경, 사전절차, 보상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부진
 - 국고보조율 구간별 비교 시 보조율이 60% 이상인 사업의 집행률은 92.4%인 반면, 60% 미만 사업의 집행률은 71.7%임. 특히, 보조율 40% 미만 사업의 경우 교부율과 집행률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으며 83개 사업 중 38개(45.8%) 사업의 집행률이 50% 미만임
 - 보조율 70~80% 구간에는 현금지급 성격으로 집행이 용이한 경상보조 사업(기초연금 등)이 다수 위치하고(보건 . 복지사업 비중 91.1%) 60% 미만 구간에는 도로건설 등 사업 비중이 높아(자본보조사업 비중 59.7%) 집행률이 부진
-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집행률(61.9%)이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집행률(95.9%)보다 34%p 낮고, 공모사업 집행률(61.5%)이 비공모사업 집행률(87.5%) 대비 26%p 저조함
-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, 설계용역 입찰공고, 계약 및 보상 절차 등에 장기간 소요, 경상보조사업 대비 집행저조
 - 공모사업은 비공모 사업에 비해 사업공모 및 선정 절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, 이후 자치단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, 발주계약 등 단계별 절차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로 인해 이월률이 높고 집행률이 저조함
- 적기집행 가능성 제고 및 집행정보 최신화 주기 단축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
- 부처는 사업수요, 사전절차 및 장애요인 등 사전검토 예산 편성
 - 자치단체에서도 사전에 계획수립, 행정절차 이행, 대응지방비 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련 필요

- 자치단체의 연도 내 국고보조사업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국비 신속교부 필요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체계 강화
- 시스템 연계성 부족, 자치단체의 연도 말 일괄정산 등으로 실시간 집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, 차년도 연말에서야 자치단체가 부처에 별도 보고
- 집행정보 시의성 저하, 평가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
- 시스템 상 실시간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 정보 확인 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재정동향&이슈, 2021.1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3. 지방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

○ 재정분권 수단으로 활용된 지방소비세제 정비

- 지방소득세 등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세목을 통한 재정확충은 주민들의 세부담 중립 또는 정부 간 재원 중립 등의 한계
- 2단계 재정분권도 1단계와 같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가능 큼
-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소비지수로 일원화하고, 정부 간 세원배분 원칙에 부합하면서 지자체 간의 균형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

○ '14년 이후 광역은 자주재원, 기초는 일반재원을 통한 재정확충

- 지자체 세입분권은 '14년도 22.4%, '20년 24.3%,1.9%p 확대
- 중앙-지방 간 세입격차는 3.5배에서 3.1배로 축소되었으나, 여전히 3배 이상의 높은 수준
- 광역의 자체재원은 1.5%p 확대, 이전재원은 0.4%p 축소,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이 1.5%p 축소, 이전재원은 1.6%p 확대
- 2020년 광역자치단체 세입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이 비슷한 수준, 기초자치단체 이전재원이 자체재원보다 2배 이상 차지

○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일원화하고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범위 확대

- 취득세 감소보전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연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도입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, 소비지수분으로 세율을 일원화 필요
- 기초자치단체에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재원 마련에 한계

출처 : 한국지방세연구원(2021.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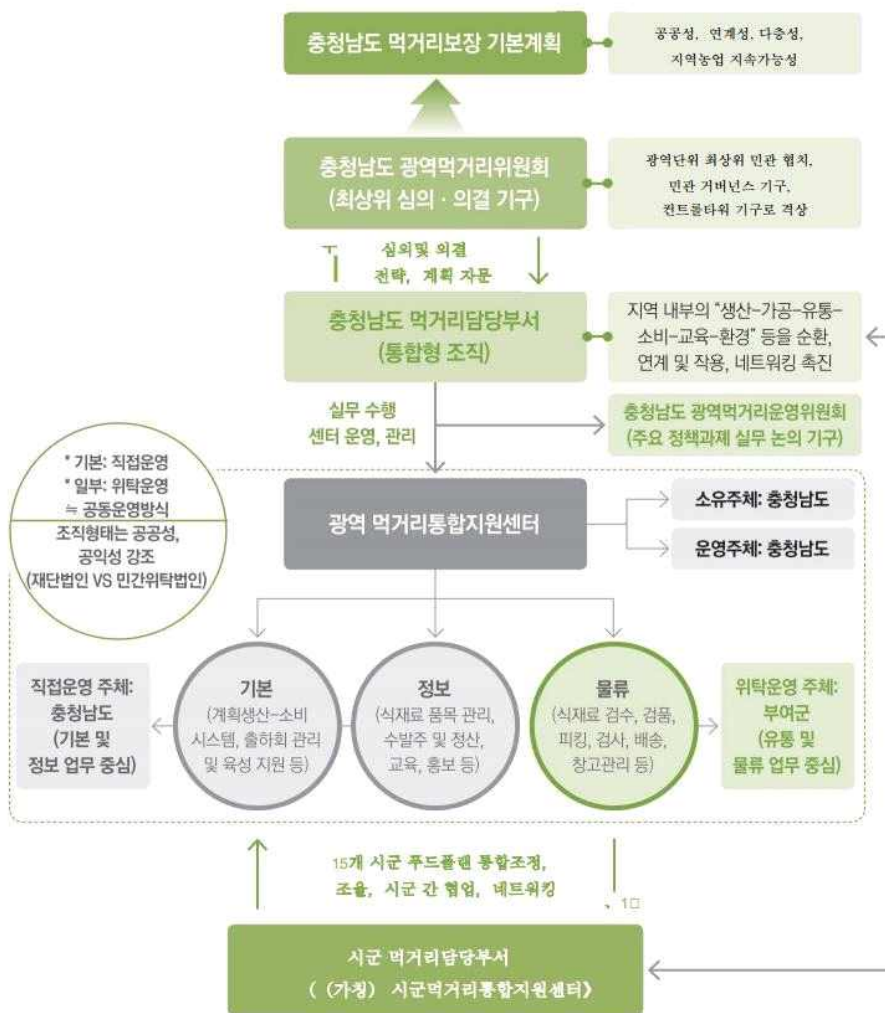
4.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

-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및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
 - 타당성 분석 (2019년 연구용역) 재검토와 함께 센터 건립 신중론과 찬성론 입장 검토 , 광역 먹거리통합정책 방향 모색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 근본적인 추진방안 제안
- 찬성론은 충남산 친환경농산물 유통 확대 , 15개 시군의 낮은 공급을 확대 , 품목 다양성 문제 및 수급가능한 품목 불균형 문제 해결 , 저가입찰제 폐해 극복 등을 근거
 - 반면, 신중론은 공공급식 수요예측에 대한 과잉 추정 , 적자운영 불가피 , 물류비 추가 소요 , 실제 농가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적을 것으로 판단
-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은 시군 먹거리통합정책이 일정 수준 안정화 궤도에 올랐을 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도 제대로 작동
- 향후, ‘재원부담 주체=물적기반 소유권=운영권 (주도권)=운영 방식-운영비 보전 일치화’가 필요
 - 재원부담 비율 , 토지와 건물 등 물적 기반 소유권 , 운영권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하고 ,
 - 운영권 중 일부 사업기능을 위탁하더라도 전 과정에 걸쳐서 충청남도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해야 함
 - ‘민관 협치 운영-조직 및 예산 등 각종 기반 확보-조직화된 생산자 및 시민 양성’도 일치 필요
 - 충청남도의 광역먹거리통합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결단력 , 도정

방향과 목표설정이 관건

-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건물과 건축, 시설과 같은 하드웨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을 추진할 운영주체 (소프트웨어) 를 포괄하는 개념
- 세부 사안별로 민간과 함께 협치구조를 만들고 논의 필요

1. 그림 2 | 충남 광역 먹거리통합정책의 추진체계도



주: 저자 작성함.

출처 : 충남연구원(열린충남, 봄호 vol 9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5. 해양바이오기업의 규제 정비 및 산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

-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원료로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뜻함
 - 미국, EU, 일본 등 주요국은 보건·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과학에 근거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개발
 - 규제 제개정할 때에는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하여 규제정책의 투명성 보장,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
-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한 규제 정비 미흡과 산업 지원 부족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
 - 해양바이오기업 규제는 규제과학에 기초하여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
 - 규제 정보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(민관협력) 구축과 산업 지원이 부족하고, 규제 정책과 산업 지원 정책이 연계 미흡
- 규제정비 및 산업지원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기술수준과 소재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능력 향상
 -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초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
 - 규제정비와 산업 지원은 서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추진
- 규제 정비방안은 바이오기업과 공통적으로 규제정비가 필요한 부분과 개별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부분으로 구분
 - 공통적 규제 정비방안에서는 중소·벤처기업 맞춤형 제조업 허가제도 도입, 규제과학에 근거한 사전검토 및 상담제 강화 제시

- 개별적 규제 정비방안은 해양의 특수한 서식환경을 반영한 기준 및 규격 설정, 식용자원의 중금속 및 지표성분 설정기준 개선
- 산업 지원방안은 공정단계별로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산업 지원대책 추진 필요
 - 시장진입단계: 권역별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창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, 투자자와의 연계 및 해양모태펀드 구성을 통한 해양바이오기업 자금 지원 등 제시
 - 연구개발단계: 해양바이오기업 산업화 타깃소재 발굴지원, 산업계 수요가 높은 핵심소재에 대한 대량생산 기술 개발 및 생산인프라 조성 등 제시
 - 실용화단계: 효능안전성 분석시험 대행을 위한 전임상/임상지원센터 조성, 식용정보 DB구축 및 식품원재료 DB등록 추진 제시
 - 상용화단계: 해양바이오 인허가 가이드라인 마련, 인허가 정보 및 자료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함
- 정책제언
 -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심사관의 이해를 제고, 제품 인허가 절차 원활하게 진행 필요
 -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헬프데스크를 운영, 규제정보 관련전문가 매칭 필요
 - 공정단계별로 규제정책과 산업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중장기추진 과제 발굴 필요

출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(연구보고서, 2021. 2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kmi.re.kr/web/view.do?rbsIdx=286&idx=36994>

6.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 효과

-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주택 및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, 부담금 산정, 행정목적, 조세, 부동산 평가 등 총 5개 분야, 63개 제도에 활용 중
 - ※ 1~2월 표준지, 표준단독주택, 4~5월 개별토지, 개별단독주택
- (시세반영율) 50~70%수준, 시세 9억원미만 주택의 경우 가액대가 같아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편차가 큼
 - ※ 공시가격 현실화율=공시가격/시세 x 100%
- 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(’20.11.)발표, 공동주택 ‘20년(69.0%)→’30년(90.0%), 단독주택 ‘20년(53.6%)→’35년(90.0%)
-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주요 제도에 미치는 연계효과
 -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및 급여액 산출,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
 - 개발 및 재건축부담금은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부재라는 한정적 상황에만 공시가격의 영향, 농지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공시가격 상승이 제한적 영향 예상
 -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, 도로점용료 등 요금과 공시가격 기반으로 산정되는 벌금 및 과태료의 증가,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자,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 감소 예상
 - 부동산 보유세수(종합부동산세, 재산세) 증가가 예상되나, 그 외 부동산거래세, 상속세 등 세수 영향은 제한적 전망
 - 분야별 연계효과를 고려한 재정영향 및 대응방안 검토 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추계&세제이슈 제14호, 2021.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7.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
○ 주요내용

-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멸실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하고,
- 국방·안보업무의 특수성, 공제조합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공제조합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를 제외
- 한편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등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간 임대·감면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

8.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

○ 주요 내용

-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소액광고선전비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한편,
-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보완하고,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액, 평가 규정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안 등을 마련하며,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

출처 : 국회의안시스템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